별첨1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확인 브리핑문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 □ 노동개혁은
 - 현장 노사의 불법과 특권을 바로잡는 노사법치에서 출발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모범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공공부문은 업무에 있어 공공성 및 신분보장,
 국민의 세금 지원 등으로
 높은 수준의 책임성, 도덕성, 민주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진짜 주인인 국민의 직접 통제가 어려워,
 노사 간의 담합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됩니다.
- □ 하지만, 지난 수년에 걸쳐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한 **정부의 지도·감독 역할이 소홀**하였습니다.
 - 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
 전국공무원노조 규약 등에서 나타난
 불법, 부당한 관행으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 * ▲송파구청 단협: 정책결정 등 비교섭대상 포함
 - ▲ 전국공무원노조 규약: 상급단체 탈퇴 방해

 이에 정부는 법령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무효인 단체협약노조규약

- □ 먼저, 불법·무효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기관 등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 □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습니다.
 - ▲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 ▲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 ▲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 □ 공무원·교원 노사는 법령에 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례·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 ▲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입니다.

- □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단체협약 불이행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 또는 노조의 단체협약 해지를 금지하는 경우
 - ▲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인 30일 전보다 짧은 기간인 20일 전으로 정한 내용 등은 시정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 □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관계 법령에 따른 판단절차 없이 조합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 ▲ 조례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 아울러 총 48개 노동조합의 규약을 살펴본 결과, 6개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 ▲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거나
 - ▲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없이, 노동조합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경우입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

- □ 다음으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례입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 135개 기관(28.2%)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불공정한 특혜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는
 -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나,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 ▲불법·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경우
 - ▲ 관공서는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비종사자 조합원도 제약없이 관공서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는 것 등입니다.
- □ 또한,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는
 - ▲ 노조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 금지 및 노조에서 채용 거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거나
 - ▲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하는 경우
 - ▲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에 대해 노조와 합의 등인데
 - 이는 공공부문의 인사, 경영 등을 왜곡할 수 있어 반드시 노·사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

- □ 정부는 즉시,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된 불법·불합리한 요소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 실태확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 고용노동부는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사법치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별첨2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확인 개요

단체협약

- □ (대상)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기관의 단체협약**
 - * '23.2~3월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단협이 있는 기관
 - ** '23.2월 ALIO 등재 기준, 전체 347개 기관 중 노조 또는 단협이 없는 75개 기관 제외 (공기업 32개 중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중 52개, 기타공공기관 260개 중 188개)

<상급단체별 확인현황(개소)>

구 분	구 분 계(479)		교원(42)	공공기관(272)
한국노총	123(25.7%)	20(12.1%)	3(7.1%)	100(36.8%)
민주노총	199(41.5%)	82(49.7%)	5(11.9%)	112(41.2%)
미가맹 등 기타	157(32.8)	63(38.2%)	34(81.0%)	60(22.1%)

- □ (범위) 단체협약 내용 중 불법, 무효 또는 불합리 규정
- (불법) 단체협약 규정이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외의 법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 (무효)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되거나 법령·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공무원·교원에 한함)
- (불합리) 공공부문의 특수성(공무수행·정부지원 등) 등을 고려하여 국민과 공공성 관점에서 과도한 혜택·부당한 경영권 침해 등의 경우

노조 규약

□ (대상) 연합단체 및 전국단위 공무원 24개, 교원 24개 노조의 규약

<상급단체별 확인현황(개소)>

구 분	계(48)	공무원(24)	교원(24)
한국노총	16(33.3%)	5(20.8%)	11(45.8%)
민주노총	3(6.3%)	1(4.2%)	2(8.4%)
미가맹·기타	29(60.4%)	18(75.0%)	11(45.8%)

□ (범위) 규약 중 단결권 제약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전반

별첨3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위반 현황

▲ 한 기관 단체협약에서 불법 및 불합리 규정 있을 시 1개 기관으로 산정

불법, 무효인 단체협약·노조규약

<1> 불법, 무효인 단체협약(공무원·교원·공공기관)

- □ ^{기관기준}총 479개 기관 중 **179개 기관**(37.4%)에서 불법 또는 무효 ^{위반기준}불법 143개 기관, 무효 116개 기관
 - (공 무 원) 불법 101개 기관, 무효 115개 기관
 - (교 원) 불법 6개 기관, 무효 1개 기관
 - (공공기관) 불법 36개 기관
 - * 무효인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에만 규정

□ 기관유형별 현황

그빔	구분 계 공무원	! 교원	공공기관							
ी स			소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대상	479개	165개	42개	272개	32개	52개	188개			
위반	179개	137개	6개	36개	3개	3개	30개			
비율	37.4%	83.0%	14.3%	13.2%	9.4%	5.8%	16.0%			

* 공무원노조법에는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과는 달리 비교섭사항(정책결정, 기관의 관리·운영)이 규정되어 상대적으로 위반비율이 높음

□ 상급단체별 현황

구분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등 기타				
112	丁世 州	소계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소계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소계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대상	479개	123개	20개	3개	100개	199개	82개	5개	112개	157개	63개	34개	60개
위반	179개	21개	13개	0개	8개	103개	79개	1개	23개	55개	45개	5개	5개
비율	37.4%	17.1%	65.0%	0.0%	8.0%	51.8%	96.3%	20.0%	20.5%	35.0%	71.4%	14.7%	8.3%

<2> 불법인 노조 규약(공무원·교원)

- □ 총 48개 노조 중 6개 노조(12.5%)에서 불법
 - (공무원) 5개 노조, (교원) 1개 노조

□ 기관유형별 현황

구분	계	공무원	교원
대상	48개	247}	24개
불법	6개	5개	1개
비율	12.5%	20.8%	4.2%

□ 상급단체별 현황

구분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등 기타		
ी च	41	소계	공무원	교원	소계	공무원	교원	소계	공무원	교원
대상	48개	16개	5개	11개	3개	1개	2개	29개	18개	11개
불법	6개	0개	0개	0개	2개	1개	1개	4개	4개	0개
비율	12.5%	0.0%	0.0%	0.0%	66.7%	100.0%	50.0%	13.8%	22.2%	0.0%

불합리한 단체협약(공무원·교원·공공기관)

- □ 총 479개 기관 중 135개 기관(28.2%)에서 불합리
 - (공무원) 11개 기관, (교원) 14개 기관, (공공기관) 110개 기관

□ 기관유형별 현황

구분 계	궤	공무원	교원		공공	기관	
丁七	/4I	る下ゼ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
대상	479개	165개	42개	272개	32개	52개	188개
위반	135개	11개	14개	110개	15개	13개	82개
비율	28.2%	6.7%	33.3%	40.4%	46.9%	25.0%	43.6%

□ 상급단체별 현황

구분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등 기타			
ाच	AI	소계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소계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소계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대상	479개	123개	20개	3개	100개	199개	82개	5개	112개	157개	63개	34개	60개	
위반	135개	37개	2개	0개	35개	63개	6개	3개	54개	35개	3개	11개	21개	
비율	28.2%	30.1%	10.0%	0.0%	35.0%	31.7%	7.3%	60.0%	48.2%	22.3%	4.8%	32.4%	35.0%	